

특수경비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선방향

The Study o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the Special Security Guards' Specialization

김종웅* · 이상철**

<목 차>

- | | |
|------------------------|----------------|
| I. 서론 |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II. 민간경비제도와 특수경비제도의 이해 | V. 결론 |
| III.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 |

<요 약>

우리 지구 상에서의 테러행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

테러의 공격목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중 이용시설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는 그 일부분을 2001년부터 특수경비에서 담당해 오고 있으나, 법·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는 물론, 나아가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을 통한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발전 방안으로 우선, 신입교육의 일괄적인 교육체계를 공통교육과 전과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되 과목과 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시행하고, 새로운 경비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함께, 교육 대상자의 교육 입교실태와 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 책임기관에서 명확한 교육목표와 지침을 주기적으로 시달하고, 교관 선발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이를 통해 전문화된 교관을 선정토록하며, '교재편찬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집필진을 엄선하고 이들이 교재를 편찬하는 등 교육지원적인 면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민간경비제도, 특수경비제도, 특수경비원,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

*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호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경호학과 교수(공동저자)

I. 서 론

사회가 과학화, 도시화, 정보화 되면서 우리 인간이 누리는 생활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와 재난은 물론, 사람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 행위 또한 그 수와 종류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날로 다양화되고 흉포화 되어 가고 있음을 일상 보도되는 언론 매체의 사건·사고 소식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한다면, 곧 우리 인간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한 상황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국민의 안전문제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최선우, 2008), 이러한 본질에 충실하여 국민의 치안문제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질서유지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공경비기관인 경찰에서 담당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 제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과거와 같이 공경비기관인 경찰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순수민간의 경비능력을 활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민간경비업이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출현하게 되었다(박준석, 2006).

근대화를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실현으로 전국 각지에 국가 기간산업 단지 와 시설이 확충되고 있을 즈음인 1960년대 후반의 국가경찰은 불안한 남북관계 안보상황 하에서 안보시국치안과 민생치안 문제를 동시에 담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의 경찰력으로는 안보문제와 국가 기간산업시설의 경비문제까지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 점이 있었다(정진환, 2004).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67년도에 청원경찰법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일정한 법적 권한을 가진 민간인 신분의 청원경찰이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제도가 출현하였다.

이후 IMF 사태에 따른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업무 개혁방안으로 청원경찰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수경비 제도'라는 새로운 민간경비제도가 만들어졌다(안황권, 2007).

특수경비제도는 제도가 시행된 역사가 짧은 점도 있지만, 일부 법률적인 미비, 청원경찰과의 이원화 운용, 특수경비원의 비전문화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완전한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경비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특수경비원의 자질향상이 최우선 해

결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현행 특수경비원의 신입교육체제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문헌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면담조사는 경호경비학 관련 교수와 경찰청(서)의 경비관련 실무간부, 국가중요시설 임원, 특수경비업체 중견간부, 특수경비원 등을 면담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난 8~9월 2개월 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대상자들의 지역분포는 중요시설과 특수경비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일원에 위치한 기관과 업체 및 그에 소속된 종사자들을 주대상으로 하였으며, 업체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였다.

또한, 면담간에는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자유스러운 대화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II. 민간경비제도와 특수경비제도의 이해

1.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는 공경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학자에 따라 ‘민간경비’, ‘임대경비(Rent-a-cops)’, ‘사경비(Private Police)’, 또는 ‘용역경비’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의미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서비스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의 활동’¹⁾, 즉 다시 말하면, ‘경비요원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이 지불하는 경비(經費)만큼의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목적은 좁게는 사회적 재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예방하는 데 있으며, 넓게는 범죄(Crime), 사고(Accidents), 낭비(Waste), 테러(Terror), 비윤리적인 활동(Unethical practices) 등의 여러 가지 위해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서진석, 2004).

1) Private Security : Report of the Task Force on Private Security.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4

2. 민간경비의 분류

1) 경비담당 조직에 따른 분류

- (1) 자체경비(proprietary security) : '사내경비'라 하기도 하며, 개인 및 기관, 기업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신들의 보호대상(시설, 사람, 물품, 정보 등)을 경비 부서를 조직하는 등 내부의 노력으로 경비하는 형태를 말한다(김성언, 2004).
- (2) 계약경비(contract security) : 자체경비와는 달리 개인 및 기관, 기업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신들의 보호대상(시설, 사람, 물품,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민간경비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경비인력 또는 경비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2) 경비 주체에 따른 분류

- (1) 인력경비 : 말 그대로 사람에 의해 범죄 및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제반경비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력경비는 상주경비, 순찰경비, 요인경호, 혼잡경비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이윤근, 2001).
- (2) 기계경비 : 각종 기계적 장치(특히, 침단장비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경비목적 을 달성하는 경비형태를 말한다. 경비현장을 고려할 때 순수한 의미의 기계경비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최선우, 2008), 인력경비와 기계경비가 혼합된 경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3) 활동영역에 따른 분류

민간경비가 제공하는 활동영역은 그 나라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민간경비 활동영역은 10개 분야 즉, 경비·감시, 조사·수사, 무장호송, 안내서비스, 질서유지, 경보시스템 작동, 침입탐지, 내부범죄 탐지, 경호, 위험·손실분석 등으로 대별되고 있다(최선우, 2008). 우리나라는 경비업법에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3. 특수경비제도의 개념

1) 특수경비업무 및 특수경비원

앞 서 민간경비의 분류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경비업법 제2조1의 마항에 의하면 특수경

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며, 또한 특수경비원은 경비현장에서 이러한 특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특수경비제도의 특성

특수경비제도는 2001년 4월 7일 경비업법의 전문개정시 새롭게 등장한 하나의 민간경비 제도로서, 그 간 청원경찰이 담당해 오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근무지역 내에서 무기 휴대가 가능한 민간경비원, 즉 특수경비원이 그 시설의 경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경비제도는 1998년 10월 2일에 국가중요시설 경비제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박병식, 2000), 2001년 인천 국제공항 개항 시에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최초의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배치되게 되었다.

새로운 특수경비제도의 탄생은 당시 정부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효율성 증대와 국가중요 시설주의 경비예산 절감, 민간경비업계의 경비시장 확충 등의 이해관계가 상호합치되어 나타난 하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경비업법령에 명시된 특수경비제도와 관련된 특성들을 정리하면 <표 2-1>의 내용과 같다.

<표 2-1> 특수경비제도 특성

구 분	내 용
목적 및 이념	준공익 추구(경찰관서장과 시설주의 감독하에 국가중요시설 경비)
경비원 신분	민간인 신분(18~58세)
직 무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수행
권 한	근무지 내에서 무기 휴대 및 사용 권한(권총, 소총)
업무 구역(대상)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 시설과 통합방위법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교 육	신입교육 : 경찰교육기관, 행안부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에서 88시간 교육 직무교육 : 특수경비업자 책임 하에 매월 6시간 교육
경비원 의무	시설주·관할경찰관서장·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경비구역 이탈금지, 쟁의행위 금지, 무기사용 시 안전수칙 이행 등
복장 및 장비	경비업법의 복제규정에 의거 식별가능한 복장 착용
벌칙 적용	경비업법상의 벌칙 적용, 형법상의 특정범죄(13개) 시 가중처벌 적용

자료 :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재구성

3) 특수경비업체 및 특수경비원 현황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경비업체 법인과 특수경비원 수는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해 오고 있으며, 법인 수에서는 매년 평균 22%, 경비원 수에서는 평균 2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 특수경비업체 및 특수경비원 현황(2007.12.31)

구분	2002년 말	2003년 말	2004년 말	2005년 말	2006년 말	2007년 말
업체(개소)	26	36	31	40	45	55
경비원(명)	2,513	2,955	4,057	5,041	5,526	6,002

자료 :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부자료, 2007

또한, 2007년 12월 말 현재 법인 수는 55개, 경비원 수는 6,002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특수경비업체가 민간경비 전체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법인 수의 1.9%, 경비원 수의 4.5% 수준으로 다소 낮게 분포되어 있으나, 최근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의경제도의 폐지²⁾ 등 향후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수경비의 수요가 점점증가해 갈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른 시장규모 확대는 물론 민간 경비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해 갈 것이다.

Ⅲ.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논하기 전에 ‘전문화’, 그리고 ‘교육훈련’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의 실상과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해 나아가고자 한다.

2) 전·의경제도 폐지론은 '95년도에 최초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참여정부에서도 2012년까지 폐지키로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최근에는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가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인권보호 국제 민간단체인 엠네스티가 한국의 전·의경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경향신문, 2008.7.22일자).

1. 전문화의 개념³⁾

1) 전문화의 정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란 전문직을 향한 노력의 과정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전문화란 직업의 전문성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professionism)은 해당분야의 해박한 지식수준과 정보관리의 기술적 능력, 정보관리의 윤리적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와 관련된 지식은 물론 기술적 능력, 그리고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서의 직업윤리 등이 전문성에 포함된다.

2) 전문화의 방법

(1) 교육과 훈련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전문화는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수, 의사, 판사와 같은 직업인을 두고 전문인(professional)이라고 칭하는데, 그들은 한결 같이 오랜 기간 동안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과정을 밟은 후에 전문직업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조사 및 연구

전문직이란 이론에 토대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을 중시한다. 이론이 있으면 전문적이고, 이론이 없으면 비전문직이라 말해도 무방하다. 이론은 조사 및 연구과정을 통해서 정립되어지는 것이며, 이론에 토대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라야 시행착오가 적은 법이다. 이렇게 볼 때, 조사 및 연구는 이론을 만들고, 이론은 전문화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3) 윤리적 강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문직은 하나 같이 그에 따른 윤리강령과 그것을 강제하는 윤리기구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벽돌공, 미장이, 이발사와 같은 직업인을 두고 기능인(craftman)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는 윤리강령이나 윤리기구가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전문성을 구성하는 지식이나 기술은 윤리나 도덕으로 뒷받침되었을 때라야 실질적인 가치가 발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전문화의 개념은 서정우(2003)의 '전문화가 살 길이다'의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함.

(4) 체계적인 충원

전문인은 반드시 체계적인 충원과정을 통해서 전문직에 진입되는 것이다. 교수나 의사나 판사와 같은 전문인은 전문적인 충원과정을 통해서 그 직업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충원과정의 체계성 여부가 전문직과 기능직을 구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2. 교육훈련 개념

1) 교육훈련의 정의

교육훈련(educational training)이란 직무 및 경영성과를 위한 조직 구성원의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계되고 계획된 학습의 과정을 말하며, 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 그리고 개발(development)의 3가지 개념이 포함된 다의적인 용어이다(Nadler, 1979 ; 허윤정, 2005).

2) 교육훈련의 목적 및 효과

교육훈련의 직접적인 목적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향상시킴으로서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George, 2000 ; 강영길, 2007).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효과는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게 되고, 특정 직무와 직무요건 면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게 한다. 또한, 새로운 인력의 충원 없이도 기존의 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만으로도 조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교육훈련을 통해서 분위기 쇄신 및 가치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Personal, 1982).

3) 교육훈련의 유형 및 방법

교육훈련의 유형은 크게 계선 중심의 직장 내 훈련(현장훈련, On-the-Job- Training), 스텝 중심의 직장 외 훈련(Off-the-Training), 그리고 본인 중심의 자기개발(자습훈련, Development)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도윤경, 1966).

직장 내 훈련은 흔히 OJT로 불려지고 있으며, 이는 직장에서 직무 계선상의 직속 상사가 직접 실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장 외 훈련은 Off JT라고도 하는데, 전문 강사진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직장 내 훈련 외의 모든 교육훈련 방식을 말한다. 양성소나 연수원 교육, 강습회·강연회 개최,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3.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

현행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유형별 교육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신입교육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자는 경비현장에 배치되지 전에 경찰 교육기관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2주간 88시간의 소정의 신입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교육 과목 및 시간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세부 교육과목을 보면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론교육은 경비업법 등 3개 과목에 대해서 15시간 동안 강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교육은 정신교육 등 17개 과목을 69시간 동안 강의를 겸한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신입교육시간이 76시간임을 고려할 때, 특수경비원이 더 많은 시간동안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직무교육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은 특수경비업자의 책임 하에 특수경비업자가 판단한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월 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직무교육시간이 월 4시간 이상, 일반경비원의 교육시간이 월 2시간 이상임에 비해 특수경비원이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선행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연구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를 위해 경찰기관과 경비협회, 특수경비업체, 교육기관 등에서 그 동안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교육훈련과 관련된 법·제도적인 측면, 제도의 실제 운영적 측면 즉, 교육시행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 지원요소적인

측면 등에서 아직도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세 가지의 측면으로 구분해서 현행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야별 문제점은 문헌조사, 관련 기관과 경비업체의 실무자, 경비원과의 면담조사, 연구자의 현장관찰 등의 조사활동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개선방안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자의 연구·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법·제도적인 측면

먼저 특수경비원 교육훈련과 관련 있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육수료 후 배치 및 근무하게 될 시설유형에 부합된 신입교육체제 마련과 이에 따른 과목 및 시간의 조정,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와 특수경비업체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제도 신설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 국가중요시설 유형에 부합한 신입교육 과목 및 시간 조정

현행 신입교육시의 교육과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경비와 관련된 총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과목별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또한 불균형함을 알 수 있다.

교육수료 후 특수경비원이 근무하게 될 국가중요시설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공항, 항만, 유류저장고, 발전소, 관공서, 산업시설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반적인 교육내용 만으로는 시설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요구되는 특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적으로, 경찰실무자의 면담결과⁴⁾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의 신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계통에서도 시설유형에 부합한 신입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현 교육기관의 능력 및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 시 그 시행의 어려운 점을 말해 주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신입교육의 체계를 공통교육과 전과교육으로 구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목과 시간을 재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시간을 추가하는 것은 경비업체의 사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는 바, 현행 신입교육시간(88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과목은 ‘공통과목’과 ‘전과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공통과목’은 현재의 교육과목을 통·폐합하여 경비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하여 신입교육 대상자 전원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

4) 경찰청 생활안전국, 00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민간경비담당 실무간부 3명과 면담을 실시(2008.8).

게 교육하고, '전과과목'은 국가중요시설 유형별로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징적인 내용 위주로 편성하여, 이를 해당 시설의 특수경비원에게 전문적으로 교육한다면 배치 초기부터 보다 전문적인 경비능력을 갖춘 특수경비원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교육과목 및 시간 조정

현행 신입교육 과목의 교육내용과 분량, 타 과목과의 연계성 및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과목의 통·폐합성을 판단하였으며, 연구자의 다년간의 군 교육기관에서의 교관 경험과 군의 각종 교육훈련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육시간 등을 기초로 과목별 적정 교육시간을 판단하였다.

<표 4-1>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과목 시간 조정방향

(현 행)			(개 선 안)				
구 분	과 목 명	시 간	구 분	과 목 명	시 간		
계	20개 과목	88	계	18개 과목	88		
이론교육 (15H)	『경비업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8	이론 교육 (15H)	『경비업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8		
	『헌법』, 『형사법』	4		『헌법』, 『형사법』	4		
	범죄 예방론(신고요령 포함)	3		범죄 예방론(신고요령 포함)	3		
실무교육 (69H)	정신교육	2	공통 과목 교육 (68H)	실기 교육 (53H)	위협요소별 대응요령 (테러, 폭발물, 화재, 자연재해)	8	
	테러 대응요령	4			응급처치법	3	
	폭발물 처리요령	6			분사기 사용법	2	
	화재 대처법	3			출입통제 요령	3	
	응급처치법	3			예절교육	2	
	분사기 사용법	3			기계경비 실무	3	
	출입통제 요령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3	
	예절교육	2			시설경비 요령(야간 경비요령 포함)	4	
	기계경비 실무	3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 포함)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총기조작	3	
	시설경비 요령 (야간 경비요령 포함)	4			총검술	4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 포함)	6			사격	8	
	총기조작	3			체포·호신술	4	
	총검술	5			관찰·기록기법	3	
	사격	8			전과과목교육 (16H)	국가중요시설 유형별 교육과목	16
	체포·호신술	5					
	관찰·기록기법	3			기 타 (4H)	입교식, 평가, 수료식	4
기타(4H)	입교식, 평가, 수료식	4					

자료 : 경비업법 시행규칙

먼저, 공통과목은 크게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으로 구분하되, 이론교육은 현행과 같이 3개 과목 15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실기교육은 현행 실무교육 17개 과목 69시간을 일부 통·폐합하여 14개 과목 53시간으로 축소 조정하고 잔여 16시간을 전과교육 시간으로 염출하였고, 그 외 입교식 등 기타 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4시간을 반영하였다.

실무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통·폐합 및 시간을 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정신교육(3시간) :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특별한 정형화된 내용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경비원의 기본적인 정신자세, 사명감, 사회에 대한 책임감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이러한 내용은 입교 및 수료식, 근무배치 후의 직무교육과 각종 회의 및 모임 등을 통해 효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과목을 삭제하였다.
- (나) 테러대응요령(4시간), 폭발물 처리요령(6시간), 화재대처법(3시간) : 경비원들은 경비대상물에 가해지는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절차와 상황보고요령을 갖추어야 한다. 테러, 폭발물, 화재 등은 경비대상물에 가해지는 위협요소들로서 이에 대한 대응절차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하나의 과목인 위협요소별 대응요령(8시간)으로 통·폐합하였다.
- (다) 분사기 사용법(3시간) : 교육내용 고려시 2시간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시간을 축소하였다.
- (라)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6시간) : 과목성격 상 경비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2시간의 교육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마) 민방공(6시간) : 이해 및 행동요령 위주로 3시간의 교육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바) 총검술(5시간) : 총검술을 숙달 또는 인내력 배양 등의 교육효과를 위해서는 5시간의 교육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어차피 내용 소개정도의 교육이라면 4시간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경비임무 수행간 과연 총검술을 사용할 경우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 시 과목의 존재 문제도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사) 체포·호신술(5시간) : 숙달하는 데에는 5시간의 교육은 절대 시간이 부족하며, 소개 정도의 교육에는 4시간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가중요시설 유형별 전과교육을 위한 교육과목을 예시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국가중요시설별 전과교육 과목(예시)

국가중요시설 유형	전 과 교 육 과 목
공항, 항만	- 취약지역 및 시설 - 순찰요령 및 착안사항 - 보안검색요령 (인원, 화물 등)
교량, 철교, 터널	- 취약지역 및 시설 - 주변지역 수색요령 - 순찰요령 및 착안사항
관공서	- 취약지역 및 시설 - 집회 및 시위시 대응요령 - 출입자 통제 및 안내요령
은행	- 취약지역 및 시설 - 고객안내 요령 - 은행털이 기법
송신소, 기지국	- 취약지역 및 장비 - 산발발생 시 조치요령 - 등산객 등 방문객 통제요령
산업시설	- 취약지역 및 시설 - 제품 운반 및 호송 요령 - 출입자 통제 및 안내요령

2) 시설주 및 특수경비업체 임원 소양교육제도 신설

현재의 경비업법의 특수경비업 허가규정을 살펴 보면, 특수경비원 20인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 20인 이상의 인원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 20인 이상의 제복 및 장구를 갖추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득할 수 있다.

특수경비업체의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로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④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령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경비업법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단지 신분적인 요소만을 고려하여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제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신입교육, 직무교육 등으로 매우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 임원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은 특수경비원의 비전문화를 낳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수경비업체를 선정해서 해당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케 하는 시설의 장(長) 등에 대해서는 경찰계통과의 비공식적이고 부정기적인 간담회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식적인 교육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안위와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시설주와 특수경비업체의 임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특수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비롯한 전반적인 특수경비 서비스가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경찰교육기관에서 담당하되, 교육시기는 특수경비업체에 대한 최초 허가 및 허가 갱신 발령을 할 때나 임원진의 교체 시, 그리고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업체를 선정 및 교체했을 때가 적절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국가적인 사명감과 책임감 배양, 완벽한 경비대책 강구, 특수경비원의 효율적인 관리, 건전한 경영윤리 등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제도 운영 및 교육시행적인 측면

1) 특수경비 전문교육기관 설립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 14조 1항에 의하면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165㎡ 이상)과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기계경비 실습실(132㎡ 이상),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또는 운동장(330㎡ 이상), 소총의 실탄사격이 가능한 사격장(10개 사로 이상) 시설을 갖춘 신청대상 중 경찰청장이 이를 확인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기관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3>에서와 같이 경비협회, 에스원, 조합, 사격진흥원 등 4~10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표 4-3> 연도별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시행기관 현황

구 분	계	교육시행기관(명칭)
2005년	4개소	경비협회, 한체대, 경기대, 에스원
2006년	10개소	경비협회, 한체대, 경기대, 에스원, 조합, 재능교육, 조은, 사격진흥원, 에스텍, 경남대
2007년	8개소	경비협회, 경기대, 에스원, 조합, 재능교육, 조은, 사격진흥원, 에스텍
2008년	10개소	경비협회, 에스원, 조합, 재능교육, 조은, 사격진흥원, 에스텍, 경남대, 대경대, 경운대

자료 :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부자료, 2008

이들 교육기관에서는 연간 2~3회의 특수경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및 업체의 면담결과⁵⁾에 의하면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전문적인 검증과정 없이

5) 경찰청,00지방경찰청 실무간부와 신입교육기관인 00업체의 실무자, 교재편찬업체 종사자와 면담실시 (2008.8).

경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들로 교육기관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운용되고 있다.

전문화된 특수경비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육기관이 전문화되어야 하며, 연간 2~3회에 걸친 교육과 일부 비전문적인 교관으로 구성된 기관을 전문화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을 양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여러 교육기관에서 양성되는 특수경비원은 그 능력이 각양각색일 수 밖에 없고, 이는 한편으로 특수경비원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인간의 전문적인 능력은 전문화된 교육에 의해서 그 자질이 배양되고 발전된다.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된 자질 함양을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인 가칭 '경비 전문학교'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한다.

'경비 전문학교'는 전국 단일, 또는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로 1개소씩 설립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이동 소요 등을 고려 시 권역별로 설립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육 소요와 인력운용에서 오는 예산적인 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전문화된 교관진에 의한 권역별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지원하는 순회교육 방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경비 전문학교'에서는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은 물론 자격증 제도 시행 시 연수 및 보수교육, 경비지도사 교육, '경영자 및 임원 교육' 등 경비업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비 전문학교'에서 경비산업과 관련된 모든 과정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본 논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경비 관련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각 교육과정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본다.

2) 실질적인 교육시행 및 확인·감독활동 강화

특수경비원, 경찰실무자 등의 면담결과⁶⁾에 의하면 신입교육시의 학급편성과 형식적인 평가시행 등 교육시행상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규정된 교육과목과 시간을 최대한 준수한 상태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교육기관은 학급편성이나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심지어 00교육기관의 경우는 교육 대상을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을 신분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그것도 특수경비원의 교육시간을 2박 3일 정도로 축소하여

6) 00공항, 00철교, 00중계소에 근무하는 6명의 특수경비원과 00경찰청(서) 실무간부 3명과 면담 실시 (2008.8).

교육한 후에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을 교부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 시달된 민간경비 교육 기본지침⁷⁾의 학사운영 원칙에 의하면, 교육과정 종료 전 평가를 하여 교육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이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몇몇 교육기관에 의하면 현재까지 교육 성적이 저조하여 수료하지 못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며, 평가 자체가 다분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면담자들의 공통적인 답변이다.

또한, 대통령 훈령 제 28호(통합방위 지침)에 의하면 특수경비원에 대한 평시 사격훈련은 경비업자 책임 하에 반기 1회 이상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명중률 50% 이상의 사격능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00 공항 등 몇몇 시설에 배치된 특수경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수경비원은 실사격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업체에서는 가스 분사기 발사 연습으로 사격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교육훈련을 통해 특수경비원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제도를 운영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앞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기관, 경비업체 측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들은 경제적인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단체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확인·감독해야 할 기관인 경찰에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진다.

민간 경비업과 관련된 경찰계통의 조직과 구성이 매우 열악한 현실⁸⁾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실질적인 문제점의 발생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원 교육의 중요성으로 볼 때, 실질적인 교육시행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경찰에서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의 보강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시행을 보장할 수 있는 부단한 확인·감독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결과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차후 허가 시 제외하는 등 신상판별하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 지원적 측면

1) 명확한 교육 목표 설정 및 지침 시달

경찰청에서 시달된 민간경비 교육 기본지침을 살펴보면 특수경비원 신입교육과정에 국한하여 경비업 법령 상에 명시된 수준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 즉, 근거, 교육실시 기관, 교육대

7) 경찰청 민간경비교육 기본지침은 2006년 초에 처음으로 시달되었으며, 민간경비 교육의 종류, 교육의 운영, 감독 및 협조, 기타사항 등을 언급하고 있다(경찰청 내부자료, 2006).

8) 민간경비업과 관련된 경찰조직은 경찰서 생활안전계 1명,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협력방법계 1명,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 방법계 1명으로 관할 지역 내 경비업체, 교육기관 확인감독, 그 외 방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경찰청, 경찰서 간부 면담 : '08.7.21).

상, 교육내용, 교육시기, 평가, 교육운영 형태(주간, 야간), 강사기준, 자격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교육 목표, 즉,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특수경비원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각 교육기관에서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교육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육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성되는 특수경비원의 수준 역시 다양할 수 밖에 없다.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은 하나의 양성교육임을 감안할 때, 그 교육목표의 설정은 더욱 중요시 된다. 교육목표가 명확히 주어져야만 그 목표달성을 위해 일련의 교육훈련 관리절차(계획 → 준비 → 실시 → 평가)가 방향성을 잃지 않고 목표 지향적으로 한 방향으로 집중하게 되며, 목표달성을 통해 배출되는 경비원 역시 유사한 수준의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은 물론 직무교육에 관한 교육목표도 함께 설정하되, 이에 부합한 세부적인 교육지침을 수립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단체, 업체에 주기적으로 시달⁹⁾함은 물론 앞서 제시한 확인·감독활동을 병행하여 강화해 나간다면 보다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2) 전문교관 선발 및 운용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의 교관운용 실정을 보면, 교관 선정과정이 매우 형식적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교관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교육기관과 친분이 있거나 교육수당을 비교적 적게 지급하는 경력이 짧은 교관이 주로 선정되어지고 있다.

교육훈련에 있어서 교관은 우선 지식의 전달자로서 피교육자의 지식과 능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행동 및 인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질문제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 허가된 교육기관에 전권을 위임하고 있는 교관운용에 관해서 보다 전문적인 교관을 엄선하여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각 교육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관자격 검증과정을 교육개시 이전에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확인하여 승인하고, 필요시 교관의 교육준비 상태도 병행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체계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전문위원회에 의한 교육용 교재 감수 및 편찬

현재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용 교재를 살펴보면, 세부 교육내

9) 경찰청에서는 매년 초에 '년도 민간경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 관련 기관, 단체에 시달하고 있으며, 교육담당 기관과 교육일정 등이 언급되어 있다(경찰청 내부자료, 2008).

용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행기관 책임 하에 교육과목과 관련된 대학 교수 등을 선정하여 이들이 집필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하여 교육용 교재로 발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교재 전반적인 구성과 과목별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목별 일부 중복되는 내용과 특수경비원의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에서 사용되어지는 교재는 교육 간에는 교과서 역할을 함은 물론 교육 수료 후에는 경비 현장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되고 편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과목별 교육범위와 세부내용을 구체화한 지침을 마련하고, 교재 편찬을 위한 경찰청 차원의 교재편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겠다. 교재 편찬위원회는 교육과목별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교재 수록내용을 연구·편찬하고, 또한 교재 내용을 감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한층 더 활용가치가 있는 표준화된 교재가 됨은 물론,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신입교육을 통일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V. 결 론

국가중요시설은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시 평시나 유사시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은 다시 한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며, 이에 대한 경비태세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공경비의 일환으로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의 치안능력 한계 봉착에 따른 새로운 시도와 당시 사회 발전과 함께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가 서로 맞물려 출현시킨 경비제도가 특수경비원에 의해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할 수 있게 한 특수경비제도이다.

오늘 날의 특수경비제도는 그 발전과정을 볼 때 초창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경찰과 협회, 학계, 업체 등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도의 성과는 그 제도를 운용하는 주체의 전문성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특수경비제도의 성과는 현장에서 고객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경비원의 전문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는 특수경비원을 전문화시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과제별 개선방향을 다시 한 번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의 교육과목을 현재의 경비 일반의 공통적인 과목에 추가하여 국가중요시설별로 특징적인 내용에 대한 전과교육이 가능하도록 과목이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시설주와 특수경비업체의 임원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이들에 의한 실질적인 경비원 지도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칭 ‘경비 전문학교’와 같은 경비분야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전문교관에 의한 통일된 교육은 물론, 각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감독기관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시행 상태, 그리고 경비업체의 교육대상자의 교육 참석여건 제공 등에 대한 확인·감독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교육 목표와 지침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관련 기관 등에 주기적으로 시달하는 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섯째,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 선발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확인기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재 편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시에는 물론 교육 후에도 활용가치가 있는 내실있는 교재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연구자가 제시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을 전문화하기 위한 현 교육훈련제도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각계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조속히 보완되어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경비제도는 물론 민간경비산업 전반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장영길(2007).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제도의 정립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성언(2004). 민간경비의 성장과 합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도윤경(1996). 전문직 여성비서의 교육훈련과 경력성공지각에 관한 연구, 비서학논총 제4권.
- 박병식(2000).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용인대학교 인문 사회과학연구소.
- 박준석(2006). 민간 경호경비 산업론, 백산출판사.
- 서정우(2003). 산업 첨단화 육성 전략(전문화가 살 길이다), 한국잡지협회 제23회 세미나 자료.
- 서진석(2004). 국가 중요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 안황권(2007). 비교 시큐리티제도론, 진영사.
- 이윤근(2001).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 정진환(2004). 경비업법 개론, 백산출판사.
- 최선우(2008). 민간경비론, 진영사.
- 허윤정(2005). 외식업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Nadler, L.(1979). *Developing Human Resources*(2nd ed.). Austin, TX: Learning Concepts.
- Personal, G. W.(1982). *A Diagnostic Approach*. 3rd, Plano, TX: Business Publication Inc.
- 민간경비 교육 기본지침. 2006, 서울: 경찰청.
- 경찰공제회(2006).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강의교재, 좋은 세상 미디어.
- 경찰백서. 2007, 서울: 경찰청.
- 경찰통계연보. 2007, 서울: 경찰청.
- 「경비업법」(개정 2005.8.4, 법률 제7671호).
- 「경비업법시행령」(개정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 「경비업법시행규칙」(개정 2006.9.7, 행정안전부령 제345호).
- 「통합방위지침」(개정 2007.12.10, 대통령훈령 제28호).
- 경향신문. 2008. 7. 22일자.

ABSTRACT

The Study o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the Special Security Guards' Specialization

Kim, Jong-Woong · Lee, Sang-Chul

As year passes, terrorism is gradually increasing. Its target has become various and arbitrary, and recently, terrorists are aiming for national major facilities which include multiplex facilities.

Although special security guards took charge of its defence system from 2002, they have failed to establish its system firmly due to some institutional inertia. And 'Professionalism' appeared to be the matter, according to the spot-probe and interviews.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devise measures to develop special security system including its specialization through investigating current educational training system.

In order to attain professionalism, establishment of new professional school, division of current education system(into common education and full-course education), and reinforcement of substantial inspection activity should be preceded. Moreover, inspection activity should include standards for engaging instructors, establishment of compilation committee for editorial supervision, and establishment of clear educational policy.

I hope the developmental measures in this essay to be speedily actualized with endeavor from police, security association, academic circles.

Key Words : Private Security System, Special Security System, Special Security Guard, National Major Facilities, Special Security Guard's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